

물품 구매 및 계약 사무 규정

연세의료원 교육용 가상 규정 — 실제 규정이 아니며 Copilot Studio 실습(지식·RAG)용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. 규정 제0000호 · 시행 2026. 1. 1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원내 물품의 구매 및 계약 사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원내 전 부서의 물품 구매, 용역 및 공사 계약 사무에 적용한다. 다만 의약품 및 진료 재료의 구매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"추정가격"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목적물의 예상 금액을 말한다.
- "수의계약"이란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상대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"일반경쟁"이란 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참가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
제2장 구매 절차

제7조 (구매 신청)

물품 구매를 원하는 부서는 구매신청서에 품명, 규격, 수량, 소요 예산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구매팀에 제출한다. 예산 배정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은 반려한다.

제8조 (구매 방법의 결정)

구매팀은 추정가격, 긴급성,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의계약, 지명경쟁 또는 일반경쟁 중 구매 방법을 결정한다.

제3장 계약

제11조 (일반경쟁 원칙)

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·용역 계약과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다.

제12조 (수의계약의 범위)

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-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
-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
- 특허·독점 등의 사유로 특정인 외에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(금액 무관, 사유서 첨부)
- 천재지변, 긴급 복구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(사후 보고)

제13조 (수의계약의 예외적 확대)

제1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, 감염병 대응 등 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계약 서류)

계약 체결 시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- 계약서 및 계약 이행 보증 관련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
- 산출 내역서 (공사·용역의 경우)

제4장 검수 및 대금 지급

제17조 (검수)

납품된 물품은 신청 부서 입회 하에 구매팀이 검수한다.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시 반품 또는 교체를 요구한다.

제18조 (대금 지급)

대금은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